

출국금지 통지서

발급번호 :

우편번호/주소	/전화번호(	) /팩스번호(
○○○과	과장 ○○○	담당자 ○○○

귀하

년 월 일

귀하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국이 금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출국금지일	
출국금지기간	. . . 부터 . . . 까지
출국금지사유	
출국금지 요청기관	

※ 안내 사항

-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,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(bordercontrol@korea.kr)으로,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하여,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법무부장관

직인